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60호 2020. 10. 5(월)

조 례

-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7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13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28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40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45
- 목포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51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규 칙

-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1
-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64

훈 령

- 목포시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66

공 고

-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3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0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01 호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1개월” 을 “2개월”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
3. ~ 5. (생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삭제>
제22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u>1개월</u>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 ----- ----- ----- <u>2개월</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삭제>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02 호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불용품의 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 된 물품 중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보훈관련 단체, 비영리 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6조의2(불용품의 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물품 중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보훈관련 단체, 비영리 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u> <u>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u> <u>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u>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03 호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목포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

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 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 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 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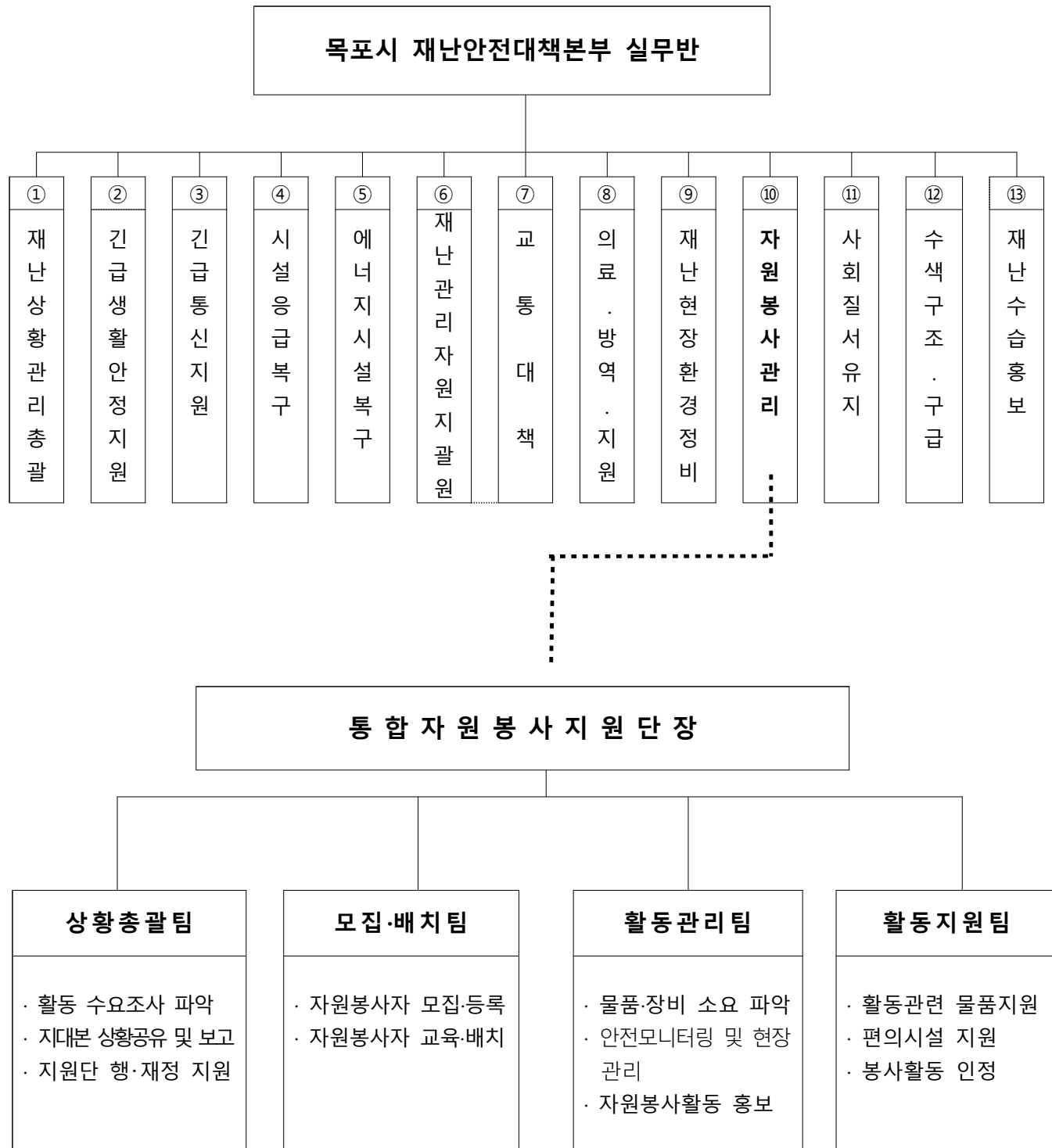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팀명	담당 사무
단장 (사회복지과장)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행·재정 지원 총괄
상황총괄팀 (자원봉사팀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관련 총괄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모집·배치팀 (부서내 팀장)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지원 ▶ 활동 개시 전 사전교육(안전 및 유의사항 등)
활동관리팀 (부서내 팀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 자원봉사활동 홍보 ▶ 자원봉사활동 안전모니터링 및 현장 관리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 (부서내 팀장)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증 등)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업무를 정한다.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04 호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목포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의과대학(이하 “의대”라 한다)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지원하여 교육 명품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시 육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간) 시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 대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관련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교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속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대학·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 대학교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자문 등)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 설립에 대한 긴급한 안전 처리나 정책 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을 초청, 방문, 서면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단, 그 내용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련 전문가 출석 및 자문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목포권 대학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05 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주사가” 를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 팀장이”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도자 및 선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대표에 선발
2. 전라남도 대표에 선발
3. 목포시 대표에 선발

제17조제3항 중 “목포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목포시 생활체육회 상임부회장”
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센터장, 목포시체육회 사무국장” 으로, “직
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주사가” 를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팀장이” 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수단의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 국·단장, 부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과장, 운영부장은 <u>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주사가</u>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② ----- ----- ----- ----- <u>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팀장이</u> ----- ----- -----.
제7조(겸직 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7조(겸직 금지) ----- ----- -----.
<u>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u>	<u>지도자 및 선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 설>	1. <u>국가대표에 선발</u>
<신 설>	2. <u>전라남도 대표에 선발</u>
<신 설>	3. <u>목포시 대표에 선발</u>
제17조(징계위원회) ①·② (생략)	제17조(징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 국·단장, 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u>목포시체육회 상임</u>	③ ----- ----- ----- ----- <u>재단법인 목포국제축</u>

부회장, 목포시 생활체육회 상임부
회장, 변호사 및 그 밖의 인사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주
사가 된다.

④ · ⑤ (생 략)

구센터 센터장, 목포시체육회 사무
국장-----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팀장이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06 호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7조제1항제1호 중 “수행자”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10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목포
시”를 “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음주”를 “음주, 흡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대관자는”을 “대관한 사람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대관자는”을 “대관을 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관자”를 “대관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대관자가”를 “대관한 사람이”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관자는”을 “대관한 사람은”으로 한다.

제36조 중 “대관자는”을 “대관한 사람은”으로, “대관자가”를 “대관한 사람의”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참여자”를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②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신설>	4.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7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무료관람) ① ----- ----- ----- -----.
1. 국민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 ----- 수행하는 사람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8.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8. ----- 사람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전시물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10. ----- - 사람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12. 목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또는 12세 이하 어린이	12. 시----- -----
13. · 14. (생략)	13. ·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③ (생략)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만취자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악제

4. (생략)

5.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18

제11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박물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

제8조(관람권) ① -----
----- 사람에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의 금지) -----
----- 사람-----
-----.

1. 술에 취한 사람

2. -----
---- 사람

4. (현행과 같음)

5. -----
-----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

-----.

1. 음주, 흡연 -----

2. ~ 4.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

제11조(손해배상) ① -----

----- 사람-----

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시장과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8조(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부 분야의 심의를 위해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8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제29조(사용시간) ① (생 략)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대관허가 신청) ① 박물관시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

-----.
----- 담당 국장-----
-----.

1. -----
----- 사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소위원회) -----

----- 담당 국장-----
-----.

제29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관한 사람은 -----

-----.

제30조(대관허가 신청) ① -----

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하여야한다. 다만,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4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때

2. (생략)

제35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

----- 사람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대관료) ① 대관을 한 사람은 -----

-----. 다만, 대관을 한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

-----.

1. 대관한 사람이 -----

2. (현행과 같음)

제35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한 사람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

자는 제35조제1항의 권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생략)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한 사람은 -----

----- 대관한 사람의

-----.

제40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참여한 사람으-----

-----.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07 호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 사무국
3.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및 재단

제4조(구매 촉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우선구매 계획 보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해 구매계획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1개월 이내에 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목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목포시 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공인 상품구매에 필요한 사항
4.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5.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가 대행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 담당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④ 실무위원회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08 호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수면”을 “수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수면에서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를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을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난구호 “란 해수면”을 ““수난구호”란 수상”으로,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의 수색·구조”를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

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8. “수난구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의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해수면”을 “수상”으로 한다.

제4조 중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를 “제2조 제4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수난구호참여자 및 민간단체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난사고”를 “조난사고 등”으로, “민간인”을 “민간인·민간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수면”을 “수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목포시에서 위탁한 민간단체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 등

제7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장”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중복금지) 시장은 수난구호참여자 또는 민간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

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신설 2015.12.21.>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	유형	내용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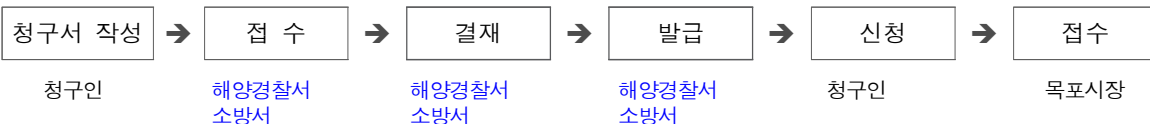
해양경찰서장 (인)

소방서장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	--

처리절차



210mm × 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u>해수면</u> 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수상</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2. ----- ----- ----- -----.
2. “조난사고”란 <u>해수면에서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u>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u>생명·신체 및 선박</u>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2. ----- <u>수상에서 다음 각목의 사유</u> ----- ----- --- <u>생명·신체 또는 선박등</u> ----- -----.

<신 설>

<신 설>

3. “수난구호 “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의 수색·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5. ~ 7. (생 략)

<신 설>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3. “수난구호”란 수상-----
-----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

4. ----- (해양경찰서-----

-----.

5. ~ 7. (현행과 같음)

8. “수난구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의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
----- 수상-----

-----.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 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목포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목포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 사고

2. (생략)

<신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4조(경비지원) ----- 제2조 제4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수난구호참여자와 민간단체 -----
-----.

제5조(지원대상) -----

----- 조난사고 등 -----

----- 민간인 · 민간단체 -----

-----.

1. ----- 수상 -----

2. (현행과 같음)

3. 목포시에서 위탁한 민간단체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 · 물품 구입 등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

-----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중복금지) 시장은 수난구호참

<신 설>

제9조 (생 략)

별지 서식 < 신설 2015. 12. 21 >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명세	유형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내용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안경비안전센터장 (인) 현장 출장소장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청구인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검자	발급 → 인청 → 접수
청구인	현장출발서 현장출장소장	현장출발서 현장출장소장	청구인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여자 또는 민간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별지 서식 < 개정 2020. . . >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명세	유형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내용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안경찰서장 (인) 조방서장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청구인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검자	발급 → 인청 → 접수
청구인	현장출발서 소장	현장출발서 소장	청구인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09 호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목포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의거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경우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지원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 및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10 호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민협의회 운영) ④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11 호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목포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목포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목포시 지역 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등·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11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교통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12 호

목포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흡연예방 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성장기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계도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통학로”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이 아동·청소년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구간을 말한다.
6. “아동·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이란 아동·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동·청소년 및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이하 “지정소매인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담배구입 여부 및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 정도 등을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란 지정소매인 등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

동·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국가금연지원 센터와 적극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아동·청소년의 권리) 모든 아동·청소년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

여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목포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5. 통학로
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표지판·안내문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판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등은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

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금연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금연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홍보차량, BIS(시내버스도착안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흡연예방과 금연에 관한 홍보 및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예방 환경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여가·문화·음악·체육·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모니터링의 실시)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목포시 아동·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 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담배구입 현황 등 담배에 대한 접근성 조사
2. 지정소매인 등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절차 시행 여부 모니터링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제보
3.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에서 지정소매인 등의 영업소 외부 담배광고
4. 제도 개선사항 제안
5. 그 밖에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시장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 모니터링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사랑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아동·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목포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는 담배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 등이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에서 담배소매업을 하는 지정소매인 등에게 담배광고를 금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통학로의 금연구역 지정 등 효율적인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13 호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별표 5” 를 “별표 4, 5” 로 한다.

별표 4 중 공공용 일반용 100 l 란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② (생 략)				제9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② (현행과 같음)					
③쓰레기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 께는 중소기업청 단체표준에 의하 고 제작사양은 <u>별표 5</u> 와 같이 한 다.				③----- ----- ----- <u>별표 4, 5</u> -----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4〕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9조 관련)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9조 관련)					
구 분	봉투 용량	높이(cm)	나비 (cm)	두께	입구 에서 당는선 까지	육는 끈폭	육는 끈길이	손잡이 끈폭 (cm)	
일반용	5ℓ	46.5	26	0.025	13.2	6	10	-	
재 사 용 봉 투	5ℓ	41.5	32 (16+8×2)	0.025	14.2	5	10	4	
일반용	10ℓ	56.5	33	0.025	15.5	7	12	-	
재 사 용 봉 투	10ℓ	53.5	36 (24+6×2)	0.025	16.5	7	12	5	
일반용	20ℓ	69.5	42	0.030	18.4	8	15	-	
재 사 용 봉 투	20ℓ	65.3	45 (31+7×2)	0.030	19.3	8	15	6	
일반용	30ℓ	78.5	48	0.035	20.3	10	17	-	
공공용 일반용	50ℓ	91.5	56	0.040	22.8	12	19	-	
일반용	75ℓ	103.5	65	0.045	25.7	14	21	-	
공공용 일반용	100ℓ	113.5	71	0.050	27.6	15	23	-	

구 분	봉투 용량	높이(cm)	나비 (cm)	두께	입구 에서 당는선 까지	육는 끈폭	육는 끈길이	손잡이 끈폭 (cm)
일반용	5ℓ	46.5	26	0.025	13.2	6	10	-
재 사 용 봉 투	5ℓ	41.5	32 (16+8×2)	0.025	14.2	5	10	4
일반용	10ℓ	56.5	33	0.025	15.5	7	12	-
재 사 용 봉 투	10ℓ	53.5	36 (24+6×2)	0.025	16.5	7	12	5
일반용	20ℓ	69.5	42	0.030	18.4	8	15	-
재 사 용 봉 투	20ℓ	65.3	45 (31+7×2)	0.030	19.3	8	15	6
일반용	30ℓ	78.5	48	0.035	20.3	10	17	-
공공용 일반용	50ℓ	91.5	56	0.040	22.8	12	19	-
일반용	75ℓ	103.5	65	0.045	25.7	14	21	-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803 호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7조제1항 중 “7명” 을 “5명 이상 8명” 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탁운영) ① (생 략)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u>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u> 2. ~ 5. (생 략) ③ ~ ⑦ (생 략)	제8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u>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u>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7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⑦ (생 략)	제17조(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 ① ----- ----- ----- 5 <u>명 이상 8명</u> -----. ② ~ ⑦ (현행과 같음)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804 호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환경수도사업단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자원순환과장
3. 지출원 : 청소행정팀장
4. 수입금출납원 : 자원재활용팀장

제3조(준용)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회계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 제 827 호

목포시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목포시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목포시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며 안전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공무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노동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관 부서의 해당 근무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부서의 소속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5. 소관 부서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소관부서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된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자)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자격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3.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 사례의 취합

5.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지휘·감독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8.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9.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10.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11.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1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보건관리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영 제21조에 따른 자격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6. 노동자의 보건교육 실시 등 건강증진 지도
7. 그 밖의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근로자 위원

가. 근로자 대표

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4명 이내

2. 사용자 위원

가. 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1명

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1명

라.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2명 이내 사용자측 구성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안전보건관리부서의 담당 주무관이 한다.

⑤ 관리책임자,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및 선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이 선임기간 내 퇴직시 해당 직위 후임자가 전임자의 임기를 대신한다.

③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1조(직무) 위원회는 목포시청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2.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3. 간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전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제12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시장은 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회의로 진행할 시 회의록 참석명부 및 심의·의결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출석 및 의견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제16조(회의결과 공지)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8조(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관리감독자 교육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③ 교육시기 및 시간,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9조(교육실시 방법)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5장 안전관리

제20조(안전관리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시장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가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④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있다.

제22조(안전, 보건진단) ① 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작업중지) ① 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①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4.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6조(성능유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5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①근로자는 제25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을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인증) ①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 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이

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과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3.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29조(안전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 (이하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에 대해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 검사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30조(안전검사의 주기)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등의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제31조(안전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보건관리

제33조(보건관리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4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노동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를 노동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시장은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한작업의 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 1(법 제140조제1

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기 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 1(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시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시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38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9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발생 부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산업재해조사표 사본 같음)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발생한 산업재해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검토는 재해발생과정 확인, 재해요인의 파악, 재해요인의 결정, 대책수립 순서로 실시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 계획을 세운다.

제8장 보칙

제42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43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 그 밖에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44조(우선적용) ① 산업안전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본 규정과 배치되는 조항은 개정된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② 본 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5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고 제2020-1506호

입 법 예 고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5.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자치법규 정비협조에 따라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조례 중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사항을 사전 해소하여 반환규정을 정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안 제22조제1항)

-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로 반환 규정 명시

3.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0. 10. 5. ~ 10. 26. (22일간)

6. 의견제출

○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시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교육체육과(목포시 양일로 203, 58613)

- ☎ 061-270-3562 / Fax 061-270-3646 / 이메일 pse1533@korea.kr

7.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 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를 제외하고는</u> <u>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u> 1.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 ----- <u>경우에는</u> <u>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철회 시 전액반환
 3. 시설의 유자·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일시정지 또는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시간 24시간 전까지 사용허가를 철회 한 때에는 50 퍼센트 반환
-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경기 및 행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목포시 공고 제 2020 - 1516호

입 법 예 고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현재 호봉제인 목포시청 하키·육상팀의 급여 산정 방식을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연봉제로 전환 및 그에 따른 단원의 등급산정 기준을 통일하여 축구팀과의 형평성 유지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 [별지 제2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를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표준근로계약 체결 명시(안 제5조)
 - 단원의 입단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을 체결
-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등급 조정 방식 변경(안 제7조)
 -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등급 조정 방식을 모든 단원에 대해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 매년 12월 또는 신규 임용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와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 평정표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는 대상을 축구 선수단원에서 연봉제가 적용 되는 선수단원으로 변경

○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봉급 방식 변경(안 제9조)

- 직장운동경기부 그 밖의 단원은 신규 단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한다는 내용 추가

○ 초임 호봉 적용 기준 삭제(안 제10조)

- 신규 단원은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초임 호봉 적용 기준 삭제

○ 수당의 적용 대상 변경(안 제12조)

- 승리수당에 한하여 지급하는 대상을 축구팀에서 연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으로 변경

○ 종목별·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 통일(별표2)

- 축구와 기타종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등급산정 기준표를 모든 종목 선수에 적용하도록 통일

※ 별지 참조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 통일 및 선수연봉액 기준표 조정(별표3)

- 축구와 기타종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급여 산정표를 모든 종목 단원에 적용하도록 통일하고, 선수연봉액 기준표의 D급과 E급을 최저임금에 맞게 조정

※ 별지 참조

○ 리그 명칭 변경(내셔널리그 → K3리그)에 따른 축구팀 승리수당 명칭 변경(별표5)

※ 별지 참조

○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근로계약서 적용(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참조

4.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근로기준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없음
-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 없음

6. 개정 조례(안) : 별첨**7.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5. ~ 2020. 10. 26.(22일간)****8. 의견제출**

-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용당동), 목포시청 3층 교육체육과
- ☎ 061)270-8639 / Fax 061-270-3646 / 이메일 pkh7028@korea.kr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근로 계약**”을 “**표준근로계약**”으로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선수단원의 등급은 **축구단원은**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하고 그 밖에 **종목은 A급, B급, C급으로** 한다.”를 “선수단원의 등급은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축구**”를 “**연봉제가 적용되는**”으로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그 밖의 종목의 단원은 신규 임용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를 삭제한다.

제7조 **제4항**을 제7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종목별**”을 삭제한다.

제9조 제2항 중 “그 밖의 단원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를 “그 밖의 단원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로 개정하고,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를 “**신규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로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별표 3의 선수 등급에 따른 초임 호봉 적용**”을 삭제한다.

제12조 제1항 중 “**축구단원**”을 “**연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으로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2】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제7조 관련)

구 분	등급	순위	총점 (100%)	훈련평가(35%)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30%)		경력 (25%)			감독 평가 (10%)	비고
				훈 련 성실도	전 술 이해도	경 기 출전율	공헌도	7 년 이상	3~6 년	2 년 이하		
점수배정	-	-	100점	20	15	20	10	25	20	15	10	-
개 인 기 록 표	○○○	A	1									
	○○○	A	2									
	○○○	B	3									
	○○○	B	4									
	○○○	C	5									
	○○○	C	6									
	○○○ 、 、	C 、 、	7 8 9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제9조 관련)

구 분	연 봉 액 기 준 표 (천 원)				
감 독	45,000 ~ 80,000				
코 치	36,000 ~ 55,000				
트레이너 (의무포함)	25,000 ~ 45,000				
구 분	연 봉 액 기 준 표 (천 원)				
	A급	B급	C급	D급	E급
선 수	55,000 ~47,000	46,000 ~38,000	37,000 ~29,000	28,000 ~23,000	21,900

※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경우 지도자의 최고 호봉은 25호봉, 선수의 최고 호봉은 15호봉으로 한다.

【별표5】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제12조 및 제21조 관련)

□ 축구팀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포 상 금		각종대회 승리수당	K3리그 승리수당
		우 승	준우승		
감독	감독	1,000,000	900,000		1,000,000
코치	코치	800,000	700,000		800,000
선수	엔트리 중 (평균) 70분 이상 출전	800,000	700,000		900,000
	엔트리 중 (평균) 70분 미만~40분 초과 출전	700,000	600,000		700,000
	엔트리 중 (평균) 40분 이하~10분 초과 출전	500,000	400,000		400,000
	엔트리 중 (평균) 10분 이하 출전	300,000	200,000		200,000
	엔트리 중 미출전	100,000	100,000		100,000

□ 하키·육상팀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금	은	동
올림픽경기 및 세계선수권 또는 아시안게임과 세계규모대회 (20개국 이상 참가시 입상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
전국체육대회	1,000,000	700,000	500,000
전국규모대회 및 일반국제대회 - 해당종목 4팀/명이하 참가시 - 해당종목 5팀/명이상 참가시	300,000 500,000	200,000 300,000	100,000 200,000
※ 개인종목의 지도자는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을 기준 적용			

〔별지 제2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 관련)

목포시장(이하 “사업주” 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주소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부서(장소) :
- 담당업무 내용 : ○○○○(담당업무명)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한 업무
- ※ 근무부서 및 담당하는 업무는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사업주” 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 가 수행업무 등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근로자” 가 신체 또는 정신적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의 종료 및 업무의 조정(민간위탁 및 외주용역포함) 등 관련예산(국·도비포함)의 폐지, 감원에 의하여 “근로자” 에 대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4. 사용부서에서 계약기간동안 업무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원·경력·학력 등을 조회한 결과 서류 전형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형사상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선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위반시)

3. 보 수

- ① (임금) 보수는 시간(일,주,월)급 : 원,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 ② (지급시기) “사업주” 는 “근로자” 에게 목포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_____)
- ③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 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 는 “근로자” 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④ (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가 유급병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기타)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 ⑥ 위 항과 달리하여 임금종류나 지급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 합의에 의한 경우 별도 정한 시간으로 함
-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 휴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한다.
- 휴 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6. 기타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계약서의 보관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주) 목포시장 :

서명(인)

(근로자) 성 명 :

서명(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서약) ① 시장과 단원은 단원의 입단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u>근로 계약</u> 을 체결한다. 다만 축구단원은 소속 연맹에서 규정한 별도의 통일 서식에 따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서약) ① ----- ----- <u>표준근로계약</u> ----- ----- ----- -----.
② (생 략) 제7조(단원의 등급 조정) ① 선수단원의 등급은 <u>축구단원은</u>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u>하고 그 밖에 종목은 A급, B급, C급으로</u>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단원의 등급 조정) ① <u>선수단원의 등급은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한다.</u>
② <u>축구</u> 선수단원은 매년 12월 또는 신규 임용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와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 평정표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	② <u>연봉제가 적용되는</u> ----- ----- ----- -----
③ <u>그 밖의 종목의 단원은 신규 임용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u>	<u><삭 제></u>
④ <u>종목별 ·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u>	③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 -----
제9조(단원의 봉급) ① (생 략) ② 그 밖의 단원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단원의 봉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단원은 <u>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은</u>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u>신규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u>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현행	개정안
제10조(호봉획정)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u>3. 별표 3의 선수 등급에 따른 초임 호봉 적용</u>	제10조(호봉획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삭 제></u>
제12조(수당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u>축구단원은</u> 승리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제12조(수당의 지급) ① ----- ----- -----, ---- <u>연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은</u>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2】 <u>종목별</u>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제7조 관련)		【별표2】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제7조 관련)	
(축 구)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 항목별 점수배정 (생 략)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u>U-17,U-19,U-20</u>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생 략)		※ 항목별 점수배정 (현행과 같음)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현행과 같음)	
(기타종목)		<삭 제>	
구 분	등 급 기 준 표		
A등급	대학졸업 선수 중 최초 임용시 1. 최근 1년 이내 국가대표(상비군 제외) 경력 선수 2. 전국체육대회(성인일반분야/개인종목에 한함) 및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B등급	1. 대학졸업선수로서 장래가 유망되는 선수 ※ 4년제 대학교에서 해당 종목 선수로 활동한 자 2. 고교졸업 선수 중 A등급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C등급	A·B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래가 유망되는 선수		
※ 등급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별표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제9조 관련)						【별표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제9조 관련)							
(축 구)						<삭 제>							
구 분		연봉액 기준표 (천원)				구 분		연봉액 기준표 (천원)					
감 독		45,000 ~ 80,000				감 독		45,000 ~ 80,000					
코 치		36,000 ~ 55,000				코 치		36,000 ~ 55,000					
트레이너 (의무포함)		25,000 ~ 45,000				트레이너 (의무포함)		25,000 ~ 45,000					
구 분		연봉액 기준표 (천원)				구 분		연봉액 기준표 (천원)					
		A급	B급	C급	D급	E급			A급	B급	C급	D급	E급
선 수		55,000 ~47,000	46,000 ~38,000	37,000 ~29,000	28,000 ~22,000	21,000	선 수		55,000 ~47,000	46,000 ~38,000	37,000 ~29,000	28,000 ~23,000	21,900
(기타종목)						<삭 제>							
구 분		초임호봉 산정기준				구 분		초임호봉 산정기준					
지도자	감 독	일반직 5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코 치	일반직 6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의무 코치	일반직 7급 공무원 1호봉 기준											
구 분		초임호봉 산정기준				구 분		초임호봉 산정기준					
		A급	B급	C급									
선 수		일반직 7급 공무원 5호봉 기준	일반직 7급 공무원 4호봉 기준	일반직 7급 공무원 2호봉 기준									
※ 지도자의 최고 호봉은 25호봉, 선수의 최고 호봉은 15호봉으로 한다.						※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경우 지도자의 최고 호봉은 25호봉, 선수의 최고 호봉은 15호봉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5】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제2조 및 제21조 관련)						【별표5】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제2조 및 제21조 관련)					
□ 축구팀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 축구팀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포상금		각종대회 승리수당	내셔널 리그 승리수당	구분		포상금		각종대회 승리수당	K3리그 승리수당
		우승	준우승					우승	준우승		
감독	감독	1,000,000	900,000	1,000,000		감독	감독	1,000,000	900,000	1,000,000	
코치	코치	800,000	700,000	800,000		코치	코치	800,000	700,000	800,000	
선수	엔트리 중 (평균) 70분 이상 출전	800,000	700,000	900,000		선수	엔트리 중 (평균) 70분 이상 출전	800,000	700,000	900,000	
	엔트리 중 (평균) 70분 미만~40분 초과 출전	700,000	600,000	700,000			엔트리 중 (평균) 70분 미만~40분 초과 출전	700,000	600,000	700,000	
	엔트리 중 (평균) 40분 이하~10분 초과 출전	500,000	400,000	400,000			엔트리 중 (평균) 40분 이하~10분 초과 출전	500,000	400,000	400,000	
	엔트리 중 (평균) 10분 이하 출전	300,000	200,000	200,000			엔트리 중 (평균) 10분 이하 출전	300,000	200,000	200,000	
	엔트리 중 미출전	100,000	100,000	100,000			엔트리 중 미출전	100,000	100,000	100,000	
(생략)						(현행과 같음)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제5조 제1항 관련)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임용에 있어 사용자인 목포시장과 피고용자인 ○ ○ ○는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당사자

가. 사 용 자 : 목포시장

나. 피고용자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2. 근로조건

가. 근로직종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나. 단원의 직책 :

다. 보 수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연봉에는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며 기타 제수당 및 포상금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 지급.

라. 복무 및 훈련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적용

3. 근로계약의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4. 기타조건

가. 피고용자인 선수 및 지도자는 붙임의 서약서에 서명날인 후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또는 계약기간 중에 고용 중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 이전에 발생한 신체상의 손상이 계약기간 중에 재발하여, 훈련 및 경기에 6개월 이상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중에 고용 중지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필요시 별도 계약서 추가 첨부)

년 월 일

사 용 자 : 목 포 시 장 (인)

근 로 자 : (인)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제5조 제1항 관련)

목포시장(이하 “사업주”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연 락 처(핸드폰)	
주 소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부서(장소) :
- 담당업무 내용 : ○○○○(담당업무명)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한 업무
※ 근무부서 및 담당하는 업무는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사업주”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수행업무 등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적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의 종료 및 업무의 조정(민간위탁 및 외주용역포함) 등 관련예산(국·도비포함)의 폐지, 감원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4. 사용부서에서 계약기간동안 업무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원·경력·학력 등을 조회한 결과 서류 전형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형사상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선고, 금지선·한정재산 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위반시)

3. 보 수

- ① (임금) 보수는 시간(일,주,월)급 : 원,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 ② (지급시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목포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_____)
- ③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

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④ (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가 유급병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기타)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 ⑥ 위 항과 달리하여 임금종류나 지급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 합의에 의한 경우 별도 정한 시간으로 함
-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 휴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한다.
- 휴 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6. 기타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계약서의 보관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주) 목포시장 :
(근로자) 성 명 :

서명(인)
서명(인)

